



안사회계법인 · 829-7575

세 계 재 경 Answer

... 2021/11/1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

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인수·합병·M&A시 주식양도세율 10%와 20% 차이

1. 소득세법 제94조(양도소득범위)와 제104조(주식양도소득세율)에서 중소기업의 소액주주 세율은 10%, 비중소기업은 20%, 대주주는 20%(3억원까지), 25%(3억원 초과), 30%(1년 미만 보유)로 차등있게 규정함.
2. 세법상 중소기업범위에 대해 10년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·규모 등을 상세히 열거 규정하였으나, 그 이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(2016년까지는 167조의8 규정임)에서 "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"로 위임규정함.
3.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 열거된 업종이나 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라도 주식·지분양도세율 10%를 적용받을 수 없고, 20% 이상 적용해야 함.
4. 중소기업 가능 사업(10% 가능) : 농업 등 1차산업, 제조·광·건설·전기·수도·정보통신 등, 도·소매, 음식, 숙박, 인적·기술서비스업, 금융·보험·부동산업, 임대업, 의료보건업 등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
5. 중소기업 해당 안됨(10% 불가능) : 전문직 서비스업(법무·회계·세금), 부동산 중개업, 소비성 서비스업 등
6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 가목 관련)